

노동분야 국정과제

세부실천계획

2008. 3. 13



목 차

1. 노사관계 선진화

1-1.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확산	1
1-2. 지역 노·사·민·정 협의체 구성	2
1-3.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	3
1-4.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서비스 제공	4
1-5.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강화	6
1-6. 합리적인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	7
1-7. 노사관계 법·제도 개선	8

2. 활력있는 노동시장

2-1. 임금·근로시간·고용 유연화	9
2-2.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·확산	10
2-3. 직업훈련시장 육성	12
2-4.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	13
2-5. 외국인력 공급 원활화	14
2-6.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	16
2-7.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	18
2-8. 일·가정 양립형 여성 일자리 확대	19
2-9. 고령자·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	20
2-10.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고용지원 강화	21
2-10-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	22
2-10-2. 특고종사자·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강구	23
2-11.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	24
2-12. 사회적기업 육성	25

3.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

3-1.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	26
3-2.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	27
3-3.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 구축	28
3-4. 노동규제 개혁	30
<붙임 1> 실천과제별 담당부서	31
<붙임 2> 2008년 실천과제 주요사업 추진일정	32

1. 노사관계 선진화

1-1

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확산 (노사협력정책국)

1. 과제내용

-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을 활성화하여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

2. 세부 실천방안

-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, 사용자의 투명경영과 고용안정 약속 등 **노사협력 선언 확산**(’08.3월~)
 -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, 근로자의 날 포상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
 - 관련 학회 합동 심포지엄(’08.4월), 대국민 홍보캠페인(’08.5월), 노사협력 우수사례 노사관계 브리프 작성·배포(분기별) 등 분위기 조성
- 생산성 향상·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**작업장 혁신 지원**(’08.3월~)
 - 매년 100개소 「**노사협의회**」를 선정·중점 지원,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작업장 혁신 주도
 - *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(35억원), 노동행정종합컨설팅(8억원) 활용,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능력개발, 투명경영,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논의 촉진
 - 작업장 혁신을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선, 고성과-고보상 컨설팅 제공 및 우수사례 발굴·확산
 - * 중장기 작업장 혁신 실천계획 수립(’08.9월)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노사협의회 활성화 지도 방향시달(2월)	근로자의 날 포상(4월)		작업장 혁신 우수사례 발굴 확산(계속)	계속	-	-	-
사업장 노사협력선언 확산(3월~)	관련 학회 심포지엄(4월)		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(12월)				
우수사례 브리프 작성·배포 (분기별)	대국민 홍보캠페인(5월)	중장기 작업장혁신 실천계획 수립(9월)					

1. 과제내용

-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,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노·사·민·정 협의회로 개편

2. 세부 실천방안

- 지역 노·사·민·정 협의회에 지역 시민단체, 주민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개정('08.6월)
 - *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('08.3월)하고 필요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추진
 - * 협의회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노사단체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('08.4월), 지역협의회 구성·운영('08.6월~)
- 지역 노·사·민·정 협의회 구성·운영 및 노사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별 예산지원('08.4월, 5.6억원)
- “지역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협약” 체결 촉진을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('08.4월~), 운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공모델 확산('08.10월~)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 방안수립(3월)	노사정위법 시행령 개정 (6월)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구성(6월)	지역노사민정 협의회 운영	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	계속	-	-	-

1. 과제내용

- 중양단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'경제 살리기'와 '일자리 창출'을 위한 노사 협력 분위기를 지역·사업장 차원으로 확산

2. 세부 실천방안

-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실용적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('08.1월~)
 - 일자리 창출,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 개발,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사 상생의 의제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실천(계속)
 - * 노사정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은 노사관계 여건 등을 고려, 개편 추진('08.7월~)
 - 경제살리기 및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정대표자 수시 간담회 개최
- 노사파트너십 기구인 「노사발전재단」 운영을 지원하여 노사주도의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도모
 - 분기별로 노사발전재단 사업 예산지원, '08년 운영성과를 토대로 '09년 지원방향과 수준을 결정하여 예산 반영
 - * '08년 51억(노사공동교육,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, 근로복지사업, 국제교류사업추진 등)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노사정위 의제별·업종별 운영(매월) 노사발전재단 지원(분기별)	'09년 노사발전 재단 지원방향 마련(4월)	노사정위원회 개편 여부 결정 및 개편안 마련(7월)	사회적대화 운영상황 평가(10월~)	계속	-	-	-

1. 과제내용

-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갈등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, 분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조정서비스를 강화

2. 세부 실천방안

- 공공부문 개혁,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(참고자료 참조)
 - 노사동향 및 전망, 대응방안을 심층 분석하고 범정부적 협조체제 구축
- 분규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367개소를 선정('08.1월)
 - 취약사업장별로 담당감독관을 지정('08.3월)하고 임단협 3개월 전부터 집중지도, 갈등요인에 대해 대안 제시 및 노사 설득
- 노동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서비스 확대
 - 사전 조정서비스 강화를 통해 분규 이전단계에서 갈등이 해소되도록 추진
 - * 사업장 특성, 지역 노사관계를 감안하여 전담 조사관을 지정
 - * 노동부·노동위원회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
 - 조정위원·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분쟁해결역량 제고
 - * 협상·조정기법 교육 강화('08.4월), 조정사례 DB 구축(계속) 등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취약사업장 선정(1월) 및 전담감독관 선정(3월)	취약사업장분규 예방활동 전개	계속	-	-	-	-	-
노동위원회 전담조사관 지정(3월)	조정위원, 조사관 교육(4월)	조정사례 DB 구축	계속	-	-	-	-

(참고)

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

□ 공공부문개혁

- 쟁 점 :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임단협과 연계하여 파업 등 반대투쟁 예상
- 대응방안 : 관계부처 TF 구성·운영, 토론회·노사면담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,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(관계기관 협조)

□ 비정규직문제

- 쟁 점 : '08.7월 비정규직법 확대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·외주화 발생시 갈등확산 우려(이랜드, 코스콤 등 일부 사업장에서 분규 지속)
- 대응방안 : 불법과건에 대한 현장 근로감독 강화,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, 정규직 전환 등 합리적 해결사례 발굴·홍보

□ 산별교섭문제

- 쟁 점 : 노조는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, 사용자는 기업별 교섭 선호 등 노사간 이견 첨예, 완성차 4사 등 산별교섭 참여를 둘러싸고 노사갈등 우려
- 대응방안 : 노사자율기조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교섭관행(이중파업 등) 개선지도, 산별교섭 매뉴얼 등 제작·배포
 - * 바람직한 교섭모델에 대한 노사 인식공유 및 대화채널 마련, 평화협정 아래 지부교섭 권장 등

□ 필수공익사업

- 쟁 점 : 협정체결 지연,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발 등 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노사갈등 예상
 - * '08.3.10 현재 244개소 사업장 중 한국수자원공사,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7개소 협정체결
- 대응방안 : 임단협 이전에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토록 현장 지도 강화, 필수유지업무 불이행시 엄정 조치

□ FTA 반대 등 정치파업

- 쟁 점 : 일부 노동계는 농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한미 FTA 비준 저지, 한-EU FTA 반대투쟁 계획
- 대응방안 : FTA에 대한 홍보·교육 강화, 불법 집회 및 정치파업 엄단

1. 과제내용

- 「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TF」 운영 및 「노무관리지원컨설팅」 실시 등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도모

2. 세부 실천방안

- 「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TF」 구성('08.3월) · 운영
 - 노동부, 지식경제부, KOTRA, 외투기업협의체, 관련 전문가로 구성
 -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애로 발생시 노무관련 고충 상담처리, 원스톱 분쟁해결 지원
 - 노동부(본부, 지방청)와 KOTRA(Invest KOREA 노사관계지원반)가 연계하여 매월 외투기업에 특화된 「노무관리지원컨설팅」 실시
- 외투기업 CEO, 학계, 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 노사관계 포럼 구성,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('08.4월~)

3. 실천일정

	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TF 구성(3월)	신속지원 TF 운영	계속	-	-	-	-	-	-
	노무관리지원 컨설팅 실시 (매월)	계속	-	-	-	-	-	-
	노사관계 포럼 구성(4월)							

1. 과제내용

- 노사의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를 유도하고, 「분규유형별 대응방안」을 마련하여 법과 원칙을 적용

2. 세부 실천방안

- 노사의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 유도, 국민적 공감대 확산(계속)
 -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장 노사갈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독려 및 근로감독 강화
 - 시대에 역행하는 전투적인 교섭 및 쟁의 행태(예 : 팽과리, 확성기 등 사용)를 지양, 자제하도록 설득
 - 노사관계 법치화 원칙을 노사 교육·홍보,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주지
- 「분규유형별 대응방안」을 마련(08.3월)하고 일관된 정책기조와 메시지를 전달
 - *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, 노조의 폭력·파괴·점거 등 불법행동 의법조치
 - * 노동부 지청별 불법행위 대응팀 구성·운영(관계기관 협조)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노사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 유도(계속)				-	-	-	-
「분규유형별 대응방안」 마련 및 불법행위 대응팀 구성(3월)	「분규유형별 대응방안」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(계속)			-	-	-	-

1. 과제내용

- 합리적 노사관계 질서 구축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·제도 정비 지속 추진

2. 세부 실천방안

- 복수노조·노조 전임자 관련 입법 추진
 - 노사정 논의('08.6월까지),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여 정부입법 추진(금년 정기국회 제출), 2010.1.1 시행에 대비
 - * 산업현장에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, 홍보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·추진('08.9월~)
- 비정규직법(기간제법, 파견법 등) 보완 추진
 - 기간제법·파견법 등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정 논의 공론화를 거쳐 보완 방안 마련('08.12월), 입법 추진('09년)
 - * (경영계)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,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주장
 - (노동계) 사내하도급 대책 마련,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 요구
-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개선 방안 검토('08년 연구용역), 제도개선 계획 마련 및 입법 추진('09년~)
 - * 노동조합 설립, 부당노동행위, 각종 신고의무 관련 제도개선 등

3. 실천일정

과제	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복수노조·노조전임자 관련 입법추진	노사정 논의 (6월까지)		입법안 마련	정기국회 제출	법시행 준비	법시행	-	-
비정규직법 보완	노사정위원회 협의 및 여론 수렴				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	입법 완료	법시행	-
집단적 노사관계 제도개선	연구용역추진				제도 개선 계획마련 및 입법추진	입법 추진	법시행	-

2. 활력있는 노동시장

2-1

임금 · 근로시간 · 고용 유연화 (근로기준국)

1. 과제내용

-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 지원 및 근로시간 · 해고절차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

2. 세부 실천방안

- 연공중심에서 직무 ·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 지원
 - 임금정보제공시스템(www.wage.go.kr) 가동('08.3월)
 - * 직업 · 산업 · 규모 · 연령 · 학력별 카테고리 중 1~3가지 선택 시 다양한 임금정보(평균 · 중위값, 상 · 하위 25% 임금수준 등) 제공
 - 임금전문가 양성을 위한 '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교육과정' 개설('08년 50명)
 - 직무 ·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, 고령자 고용안정(임금피크제), 작업장 배치 전환 개선 등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직무체계 컨설팅 제공
- 근로시간 · 해고절차 등 법제 개선
 - '탄력적 근로시간제'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 검토
 - '근로시간계좌제'를 도입,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 및 초과근로시간 등을 저축한 후 필요시 일시에 휴가로 사용 가능토록 추진
 -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를 사업주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확대 방안 검토(현재는 근로자만 신청 가능)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임금정보시스템 가동(3월)	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등 연중 추진			-	-	-	-
개별적 고용관계법·제도 개정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				법령 개정 추진	-	-	-

1. 과제내용

- 구직자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「직업능력개발계좌제」를 도입 · 확산

2. 세부 실천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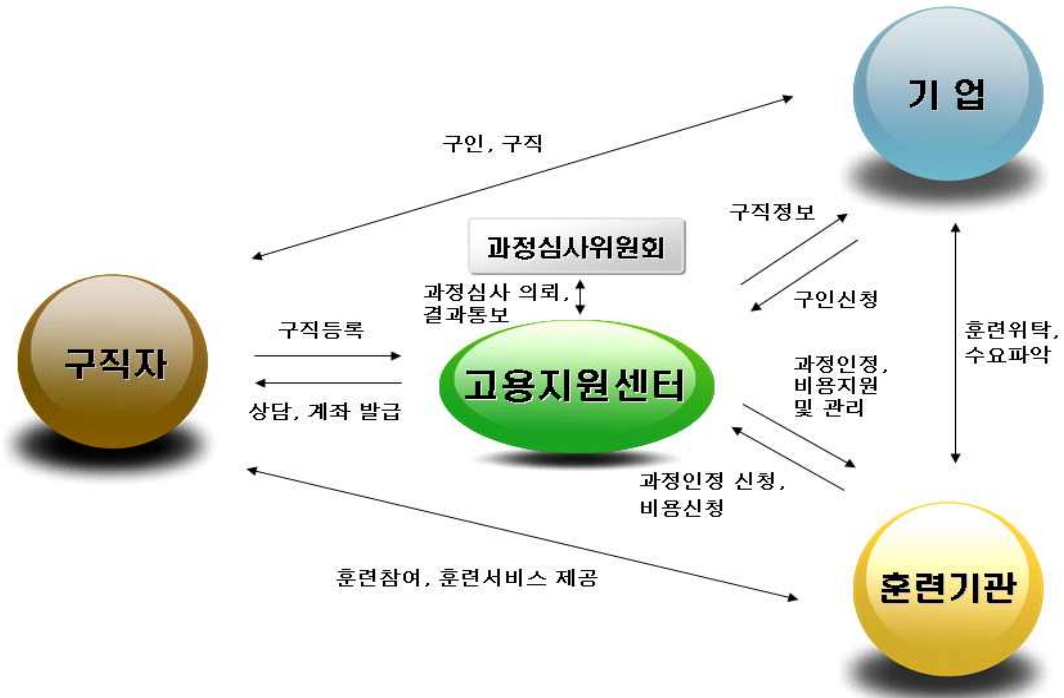
- 구직자가 “개인별 맞춤 상담”을 통해 「직업능력개발계좌」를 발급 받고, 선택가능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 · 이용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
 - * 선택가능한 훈련과정은 산업계, 학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의 훈련과정심사 위원회에서 교과내용, 비용수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
- 맞춤상담을 위한 인프라 확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
 - 실업자 일부 시범실시('08.9월) 후 청소년 · 제대군인('09년), 중소기업 근로자('10년), 비정규직('11년) 등으로 확대하여 '11년에 전면실시
- 계좌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('08.3월)하고,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추진('08.11월)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계좌제추진 TF 구성 (3월)	상담프로세스 구축(6월) 전산시스템 개편(6월)	실업자일부 시범실시 (9월)	법개정안 국회제출 (11월) 확대시행 계획수립 (12월)	적용대상 확대 (실업자, 청소년, 제대군인)	적용대상 확대 (중소기업 근로자)	전면실시	-

(참고)

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 개요도



【구직자의 참여절차】

① 구직등록 → ② 훈련상담 및 개인별 훈련계획 수립 → ③ 계좌 발급 → ④ 훈련참여 → ⑤ 훈련이수 후 취업지원

【훈련기관의 참여절차】

① 과정인정 신청 → ② 과정심사 및 인정 → ③ 훈련 실시 → ④ 비용지급 신청 → ⑤ 비용지원 및 평가

1. 과제내용

- 직업훈련시장에 **공정경쟁 기반**을 조성해 양질의 훈련과정이 다양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,
 - 훈련수요자가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하도록 **상세한 정보 제공**

2. 세부 실천방안

-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참여요건*을 폐지하여 실업자훈련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
 - *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으로 참여요건 제한(직능법 시행령 제12조)
- 획일적인 기준단가에 의한 지원방식을 실비기준, 사업단위 공모(Project Financing) 등으로 다양화하여 질 높은 훈련기관들의 참여유인 제고('09.3월~)
- 훈련기관·과정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
 - 훈련기관의 평가등급 공개(현행) 뿐 아니라 시설·장비, 훈련프로그램·훈련교사 수준 등도 포함한 선택가능한 훈련과정 목록을 공개('08.9월~)
 -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은 사업참여 제한 등 퇴출시스템 구축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	훈련기관평가 (4~11월)	기준단가체계 개편모형 개발(9월) 선택가능한 훈련과정 목록공개 (9월)	직종별 훈련비 실태조사 (12월)	진입장벽 철폐를 위한 시행령 개정(1월) 기준단가 관련 규정개정(3월)	-	-	-

1. 과제내용

- 모기업이 교육·훈련능력을 갖춘 대학과 연계하여 중소기업훈련을 지원토록 하고,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급훈련 참여기회도 확대

2. 세부 실천방안

- 「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」 사업 시행('08.4월~)
 - 모기업과 대학이 중소협력업체 훈련을 위한 협약체결 후 대학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·장비비 및 인건비·운영비를 지원
 - *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삼성전자와 협약(MOU)을 체결하여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확산·발전
- 중소기업근로자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지원분야 확대('08.2월)
 - 통상적인 훈련비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고급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분야를 생산관리 및 기술경영분야 등으로 확대
 - * '07년 : 전략경영, 인사·조직관리, 품질관리 등 6개 분야
 - '08년 : 생산관리·생산기술, 기술경영·연구개발 분야 추가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핵심직무능력 향상 훈련분야 확대 (2월)	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사업 시행(4월)			확대분야 성과평가 및 추가확대 검토(1월)	-	-	-

1. 과제내용

- 외국 인력 도입 규모와 절차를 개선하고, 사회정착 지원, 기술인력 교류기반 조성 등도 추진

2. 세부 실천방안

- 인력부족 실태조사 실시('08.6월)
-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시장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
 - 기업수요와 업종별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가능성을 고려한 도입규모 설정 기준 마련('08년 연구용역)
 - 수요자(기업·외국인근로자)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절차 등 규제 개선('08년 법 개정)
 - *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 절차 없이 지속 근로 허용, 근로계약 기간 1년 제한 완화, 외국인근로자 국내 취업 후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등
 - 자격요건, 학력, 임금요건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외국인력 분류 체계 정비
 - * 금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 마련
-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생활 적응을 위한 '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' 확충('07년 3개소 → '08년 4개소)
- 동포들의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 방안 마련 등 안정적인 취업활동 지원(금년중 법개정 추진)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제도개선 의견수렴(3월)	인력부족 실태조사 실시(6월)	법개정안 국회제출 (8월)	법 개정 완료(12월)	하위법령 정비(6월)	-	-	-
적정도입규모 연구용역(3월)	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개소(6월)						

(참고)

외국인 현황 및 외국인 고용절차

□ 외국인 수

- '07.12월말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수는 104만6,181명 중 외국인력 체류 규모는 총 64만2천명

* 합법체류자 44만명(68.5%), 불법체류자 20만명(31.5%)

- 합법체류자는 비전문취업자(E-9)(13만4,012명) 및 전문인력(3만4,128명) 등 취업사증을 가진 외국인 18만여명, 동포(H-2) 체류자 23만여명, 산업연수생 및 단기취업 체류자 등 2만8천여명 등임
-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일반외국인의 경우 제조업에, 동포의 경우 건설·서비스업에 주로 취업

□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

○ 일반 외국인근로자

① 내국인구인노력(3~7일) →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(고용지원센터) → ③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 → ④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→ ⑤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수료 → ⑥ 사업장 배치

○ 동 포

① 내국인구인노력(3~7일) →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(고용지원센터) → ③ 근로계약 체결 없이 입국하여 취업교육 수료 및 자유품구직 → ④ 근로계약 체결 → ⑤ 근로개시 신고

1. 과제내용

- 청년들에게 해외인턴 등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, 해외 취업을 활성화

2. 세부 실천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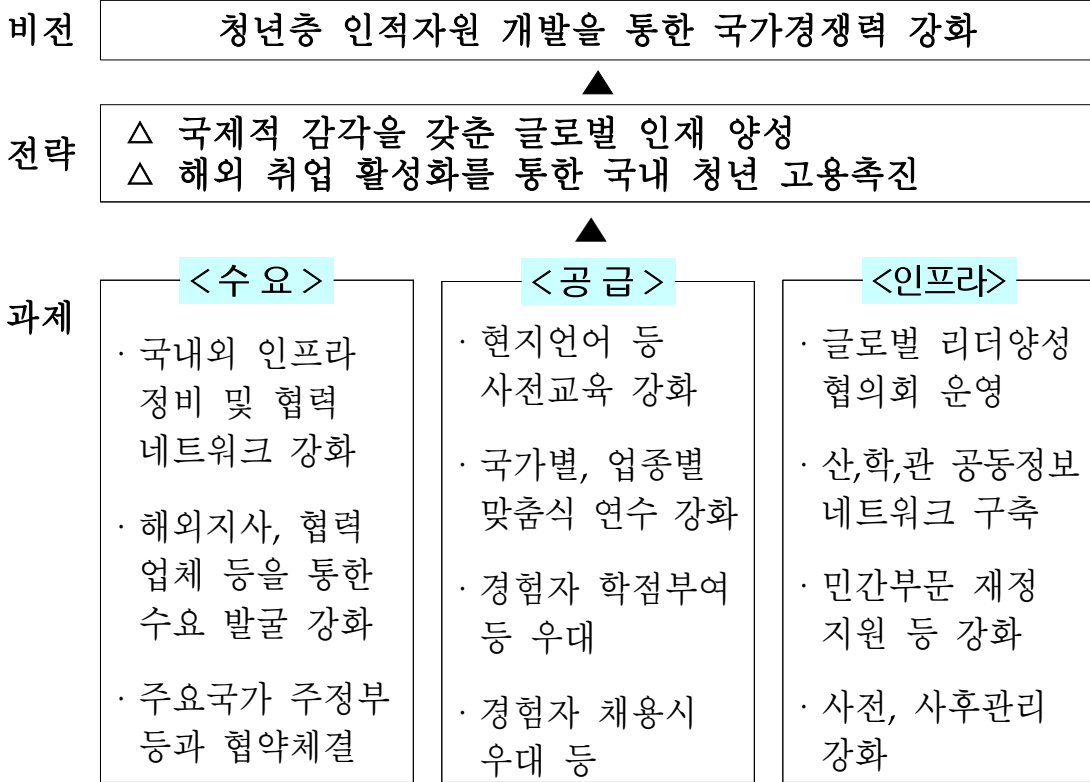
- '08년 인프라 구축, '09~'12년 해외인턴(3만명), 해외취업(5만명), 자원봉사(2만명) 실시(관계부처 협조)
- 경제계-대학-정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경쟁력있는 민간 분야를 최대한 육성·활용
 - '청년층 해외일자리 만들기' 산·학·관 협약 체결('08.4월)
 - * 경제5단체-대학협의회-정부 등 각 주체별 책무명시(경제계 : 청년층 해외 일자리 확보·현지적응 지원, 대학 : 양질의 인재 육성, 정부 : 재정지원 등)
- 해외취업 주관기관(한국산업인력공단) 중심으로 국내·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, 해외수요 발굴 활동 강화
 - * 한상네트워크 : 대학생 해외인턴·해외취업
 - *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: 청년 해외봉사단
 - 세계적 알선업체(몬스터닷컴·아테코 등)·국제인턴기구(IAESTE) 등과 업무 제휴, 능력있는 국내업체·대학 지원(운영비 등) 병행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글로벌 인재양성 산학관 협약 체결(4월)		청년실업 해소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	개정법 국회통과	청년고용 촉진계획 수립·시행	계속	-	-

(참고)

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기본방향



◆ 분야별 정책목표, 대상 및 계획

구분	정책목표	사업대상	연차별 계획	
			'08	'09~'12
해외인턴	· 국제적 경험축적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	· 대학 재학생 (졸업 예정자)	· 인프라 구축 · 산,학,관 연계 방안 강구	· 4,500명(09) · 최종 3만명 달성 추진
해외취업	· 해외취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청년 실업 완화 기여	· 학교졸업(예정)자, 청년실업자 및 취업 애로층	· 현행 시스템 문제점, 발전 방향 등 검토	· 6,500명(09) · 최종 5만명 달성 추진
해외 자원봉사	· 개도국 자원봉사 등을 통한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재 육성	· 봉사, 희생정신을 갖춘 인재 · 의료, 컴퓨터 등 기술인력	· KOICA 중심 개선책 마련	· 최종 2만명 달성 추진

◆ 대학, 민간 해외취업연수 기관, 국내외 취업알선업체 등 경쟁력 있는 민간 분야를 최대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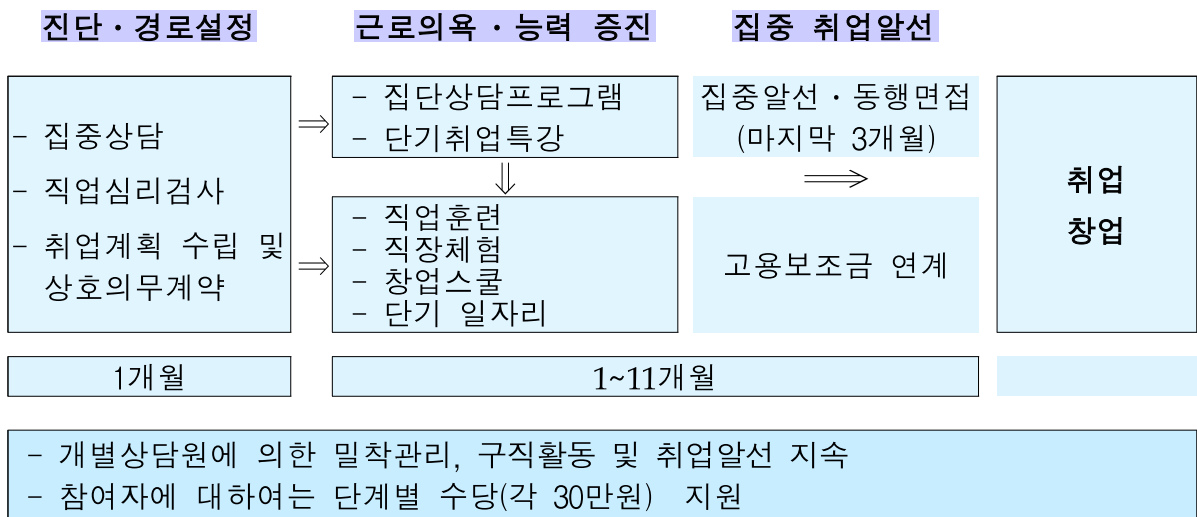
1. 과제내용

- 실업·비경황에 있는 취업애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(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한 효과성 높은 취업지원)

* '07년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7.2%(실업자수 33만명), 취업준비생·실망실업자 등 포함시 취업애로층은 99만명, 취업소요기간은 11개월

2. 세부 실천방안

- '08년에는 저학력·저소득, 니트족 등 취업취약 청년층 3천명을 대상으로 3단계에 이르는 종합 서비스 제공('08년)
- '09년에는 2만명으로 확대하고,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협력 추진

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	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	청년실업해소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관련 예산 반영	개정법 국회 통과 예산 확정	프로젝트 실시 및 프로그램 내실화	-	-	-

1. 과제내용

- 육아 등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여성들의 재취업지원과 취업 여성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(여성경제활동참가율 : 54.8%, OECD평균 60.8%)

2. 세부 실천방안

- 파트타임 등 일·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
 - 워크넷에 파트타임 DB 구축 등 파트타임 취업지원 강화('08.5월)
 - 파트타임·재택근로 등 일·가정 양립형 일자리 우수모델 개발('08.12월)
 - 육아·학습 등을 위한 “근로시간단축 청구권” 도입,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의 특례로 인정되는 파트타임 한도(15시간 미만)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('09년)
 - * 풀타임근로자가 학업과 질병, 육아 등 특수한 사정으로 시간제근로를 원할 경우 이를 사용자측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
 - *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중 파트타임 비중 12.3%, OECD 주요 선진국 40~50%
- 기업의 산전후 휴가 부담 해소
 - 기업이 일부 부담하는 산전후휴가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되, 재원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
 - *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하여는 사회보험으로 급여가 지급(월135만원 한도)되고,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주가 부담하는 상황.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휴가기간 중 적정수준의 소득대체율과 재원, 산전후휴가 유급의무 해소를 연계 검토 필요
-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민간여성훈련기관 중심으로 훈련과 취업알선, 보육정보를 one-stop으로 제공하는 여성 ‘다시 일하기센터’ 운영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-	산전후관련 TF 구성(4월) 파트타임 DB구축(5월)	다시 일하기센터 시범운영(9월)	파트타임모델 개발(12월) 산전후개선방안 마련(12월)	근로기준법, 고용보험법 등 개정 추진 다시 일하기센터 50개소 설치	20개소 추가	20개소 추가	10개추가 100개 운영

1. 과제내용

- 고령자가 능력껏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마련

2. 세부 실천방안

○ 고령자 고용 촉진

-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**정년연장장려금을 지원('08.1월~)**
 - * 평균 정년이 56.9세로 '01년 이후 정체상태이며,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도 여전히 빠른 편(54세)
<정년추이 : 57.2세('00) → 56.7세('01) → 56.8세('04) → 56.9세('06)>
 - * 정년연장장려금 :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1년이상 연장한 사업주에게 정년연장 기간의 1/2기간 동안 1인당 월30만원 지원
- 한시제도('06~'08년)인 **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**
- 정년을 초과하여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신청만으로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하도록 개선
 - * 현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보전수당을 제공

○ 장애인 고용 촉진

- 장애유형별 특화훈련, 기업 맞춤형 훈련 등 훈련유형을 다양화하고 **중증장애인 고용기회가 확대 되도록 의무고용제 개편**
 - *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5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2%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, 초과시 장려금 지급, 미달시 부담금을 부과(50~99인 면제)하는 제도
→ '06년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1.37%, 장애인수는 약 8만명

3. 실천일정

	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정년연장 장려금 지원(1월)			-	임금피크제 개선 관련 법령 개정(12월) 장애인법 개정 완료	-	개정법률 시행	-	-
		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마련						

1. 과제내용

-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제도 확충 및 취업지원 강화로 일을 통한 복지 실현

* 전체가구 1/3이 빈곤위험에 직면(일시 15.3%, 반복 16.3%, 계속 4.0%, '06년)

2. 세부 실천방안

- 고용보험(실업급여)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(생계급여)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『(가칭)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』 제정('08년 입법 완료)
- 『심층상담 → 직업훈련·직장체험 → 취업알선』 등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('09년 시범사업 후 확대)



3. 실천일정

	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 초안 마련(3월)	입법안 마련(6월)	법안 국회 제출(9월)	법제정 완료(12월)	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범 실시(3천명)	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(1만명)	계속	-	

1. 과제내용

-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(38만명)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('08.7월)

2. 세부 실천방안

- '08.7.1부터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
 - * '07.12.14 산재보험법, '07.12.27 보험료징수법 개정
 -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
 - * 입법예고('08.2~3월), 법제처 심사('08.4월), 국무회의 및 공포('08.5월)
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 고시
 - * 연구용역('08.2~5월) → 기준임금 고시('08.6월)
 -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 홍보
 - * 보도자료 배포, 홍보자료 발간·배포, 사업주 교육('08.6월)

3. 실천일정

구분	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산재보험법 등 하위법령 개정	입법예고 (2~3월)	법제처 심사(4월) 국무회의 및 공포(5월)	산재보험 적용(7.1~)	-	-	-	-	-
기준임금 고시	연구용역 (2~5월)	기준임금 고시(6월)	-	-	-	-	-	-
근로자·사업주에 대한 홍보	-	보도자료 배포·홍보 (5~6월)	-	-	-	-	-	-

1. 과제내용

- 특고종사자·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

* 그간 고용보험은 1인이상 전 사업장('98.10월) → 일용근로자('04년) → 소규모 건설('05) → 65세이상 고령자(실업급여 제외) 등으로 지속 확대

2. 세부 실천방안

-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하여 노사정 공동 TF 또는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금년중 실행방안 마련('08.12월)

* '07년 연구용역(설문조사) 결과, 직종별로 70.3%(보험설계사) ~ 87.7%(레미콘 기사)가 가입을 희망

-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실태, 고용보험 수요, 외국사례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'09년에 개선방안 마련, 입법 등 추진

3. 실천일정

구분	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특고종사자	-	노사정 TF 구성 또는 노사정위 (4월)	TF논의 계속	개선방안 마련(12월)	입법추진 (상반기 국회제출)	-	-	-
영세자영업자	연구용역 계획수립	연구용역 발주	-	연구용역 종결	노사정TF (자영업자 포함) 구성운영 및 개선안 마련	TF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추진 (상반기 국회제출)	-	-

1. 과제내용

- 비정규직법 확대적용에 따라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비정규직 처우개선 유인 제공
 - * '08.7부터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100~299인 사업장에 적용, 비정규직의 93.8%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고,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 - * '07.6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68.8%가 인력·자금 등의 여력이 없어 법 시행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

2. 세부 실천방안

-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지원
 - 중소기업이 노사협약에 의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('09년 300억원, 사업장당 500만원 한도, 6,000개소)
-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
 - 중소기업이 '07년말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'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
-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
 - 중소기업에 대해 직업훈련시 대체인력 채용지원('09년 37억원),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계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중 생계비 대부('09년 118억원), 주말·단기 과정 제공('09년, 100억원)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	고용보험법 개정추진	-	고용보험법 개정완료	-	-	-	-
	기금예산 반영	기금예산 반영	기금예산 확정	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			

1. 과제내용

- 장애인·저소득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육성·지원(2012년까지 1천개)
 - * 사회적기업 :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하는 기업
 - * 사회적기업육성법을 '07.1월 제정하여 '07.7월부터 시행중이며, 2차에 걸쳐 55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

2. 세부 실천방안

-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절차 완화 등 제도개선(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, '08.12월)
 - * 사회적 기업의 범위(정의) 협소, 까다로운 인증 요건(취약계층 고용50% 이상, 매출액 30% 이상 등) 및 절차 등이 사회적기업 활성화 저해요인
- 재정·경영·조세감면·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('08.8월)
 - *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협의
-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기업 지원 연계
- 관계부처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촉진 지원('08년~)
-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「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('08~'12)」을 수립 ('08.8월)하여 추진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제도개선 의견수렴 (3월)	법개정안 마련(6월) 공청회 개최(5월)	법개정안 국회제출(9월) 육성계획수립 (8월)	법 개정 완료(12월)	하위법령 정비(6월)	-	-	-

3.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

3-1

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(근로기준국, 노사협력정책국)

1. 과제내용

-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 역량집중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하고, 사전예방 지원서비스 실시

2. 세부 실천방안

- 「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」(‘08.2.1.)에 따라 1만9천여 개소 감독
 - * 5대 취약계층(비정규직·연소자·여성·장애인·외국인) 및 3대 취약분야(최저임금·근로시간·근로자파견) 중심으로 근로감독 실시
- 「노동행정종합컨설팅」을 통해 노동관계법 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(50인 미만 기업이 98.9%) 등을 주요대상으로, ‘찾아가는 서비스’로 애로사항을 상담·지원
 - * 단체컨설팅 : ‘08년 500회(3.5만여 기업 참여 예상)
 - * ‘08년 예산 : 9억원
- 저소득(월150만원 미만)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신청시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(‘08.3월) 받도록,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 신청 건당 보수를 50만원내에서 지원
 - * ‘08년 예산 : 2억원(일반회계)
-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활용 지도, 법 준수기업에 대한 정기감독 면제(3년) 등을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분위기도 확산
- 근로감독청원제 도입으로, 근로자 개인(노동조합)이 사업장의 근로조건 침해 해소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하면, 심사 후 근로감독을 실시

3. 실천일정

	'08년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			
5대 취약계층 중심 근로감독 실시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시행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(3월~)	계속	-	-	-	-	-	-

1. 과제내용

- 3대 다발 산업재해(협착·전도·추락) 감소를 위한 집중관리
 - * '07년 3대 다발 산업재해자수는 43천명으로 전체 재해자수의 47% 차지
-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 등 근로자 건강보호

2. 세부 실천방안

- '08년부터 협착·전도·추락재해 발생 또는 취약 사업장을 매년 8,000개소 선정
 - 사업주에 대한 재해예방기법 교육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고, 지역별 안전보건 캠페인 등 홍보 실시
 - 안전공단, 재해예방민간기관이 사업장을 방문, 재해예방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소요를 파악, CLEAN 사업 및 용자지원
- 특수검진,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장별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DB화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법 등을 지도('09년부터)
 - * '08년에 『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』 과 연구용역을 통해 화학물질 조사계획 수립
- '09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또는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 건강관리 취약 사업장을 선정, 집중지원('09년 5만개소)
 - 산업간호사가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, 근로자 혈압·당뇨 측정 등 개인별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건강관리방법을 지도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3대 다발재해 집중관리 계획 수립	교육·홍보·지원 실시	계속	-	-	-	-	-
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	연구용역	-	화학물질 조사 계획 수립	실태조사 및 DB구축	계속	-	-
간호사 방문지원 기본계획 수립	세부시행 계획 마련	소요예산 확보	사업설명회	간호사 방문 기술지원실시	대상 확대	계속	-

1. 과제내용

-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, 고용지원센터 운영혁신을 바탕으로 중앙-지방, 공공-민간을 연계한 고용지원서비스망 구축

2. 세부 실천방안

- 고용지원센터와 시·군·구 희망복지 129센터, 민간협력기관을 온·오프라인으로 연결하여 고용지원서비스망을 대폭 확충
 - * 고용지원센터 중심(84개) → '12년 공공·민간네트워크(1,000여개)
 - * 취약계층 전담취업지원센터(공설민영 방식, '08년 37개소 → '12년 100개소), 기업지원 출장·이동센터(지역경총 등 공동, '08년 12개소 → '12년 50개소)
 - * 1,000여개 네트워크 기관을 오프라인(민간위탁 등) 및 온라인(워크넷)으로 연결
- 성과평가·공개, 보수·인사 반영, 경영컨설팅 등 고용지원센터 혁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('08년~)
 - * 장기적으로 공공은 구직자 능력진단·취업경로 설계·실업급여 지급 등에 집중 (One Stop Gateway), 개별 프로그램은 민간 중심으로 제공하는 역할분담 모델 구축
- 직업소개 등 가격규제 개선, 우수기관 인증제, 프로그램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해 시장 형성 및 양질의 종합인력서비스 회사 육성
 - * '08년 연구용역, '09년 직업안정법 전면개정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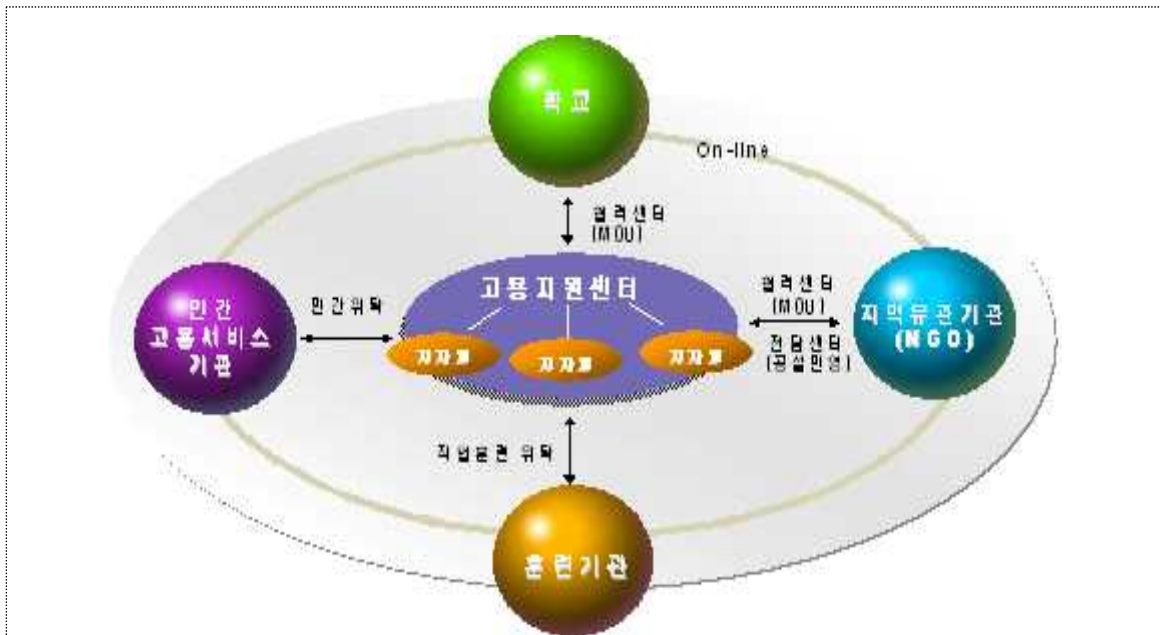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고용지원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(3월)	고용지원센터 경영컨설팅 (4월~)	직업안정법 개정안 마련(9월)	직업안정법 개정안 국회제출 (12월)	직업안정법 개정 완료	고용지원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전부 완료	-	-
직업안정법 전면개정 연구용역 (3월)	연구용역 중간점검 (6월)		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(12월)	센터-지자체-협력기관 온라인 연계	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확대		

(별첨)

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 체계

- 국가(고용지원센터), 지자체(취업정보센터), 유관기관(NGO, 학교 등),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을 촘촘히 연결한 고용지원망 구축
- 취업지원 민간위탁 확대, 유관기관 교육훈련 지원, 취업지원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
- 지역 차원에서는 워크넷(지역별 고용지원센터)과 대학, 지자체, 협력센터, 훈련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



- ▲ 고용지원센터 : 단기적으로 고용서비스 선진화, 중·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 민간이관 및 민간부분 지원 강화
- ▲ 지자체 : 취업정보센터 인프라 확충 및 전담인력 확보 지원
→ 지역주민에 근접하여 기초적인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
- ▲ 지역유관기관 :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알선 활성화 및 심층서비스를 고용지원센터로 연결하는 협력센터 기능 수행
- ▲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: 민간위탁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의 모세혈관 기능 수행

1. 과제내용

- 노동법상의 노동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(zero-base)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노동행정 제도·절차를 개혁

2. 세부 실천방안

- 노사가 참여하는 『규제개혁 TF』를 구성·운영하여 장·단기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 등 추진전략을 수립

* 위원장: 차관, 위원: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·해당 국장

- 모든 법령, 지침, 고시 등에 대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('08.6월)

- 법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발굴과 동시에 개선을 추진

-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로서 조기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내에 관련 법령 등을 개정

-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, 깊이있는 연구·조사가 필요한 과제는 금년 중 필요한 노사합의, 연구·조사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, '09년부터 추진

※ 개혁과제(예시)

<임금·근로계약> 최저임금제도의 합리화, 근로시간 등의 탄력성 제고, 비정규직 제도 개선 등

<산업안전·보건> 석면해체·제거 관련 규제 합리화, 특수건강진단비용 부담방법 개선,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행정부담 감축 등

<노동시장>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, 민간직업소개사업 규제 완화, 직업훈련 시장의 진입장벽 제거 등

3. 실천일정

'08년				'09년	'10년	'11년	'12년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		
노동규제전수조사(6월)		규제개혁 추진전략 마련					
단기과제 개선				계획에 따른 규제정비			

<붙임 1>

실천과제별 담당부서

실천과제명	담당부서
1. 노사관계 선진화	
1-1.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확산	노사협력정책국
1-2. 지역 노·사·민·정 협의체 구성	
1-3.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	
1-4.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서비스 제공	
1-5.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강화	국제협력관
1-6. 합리적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	노사협력정책국
1-7. 노사관계 법·제도 개선	노사협력정책국, 근로기준국
2. 활력있는 노동시장	
2-1. 임금·근로시간·고용 유연화	근로기준국
2-2.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·확산	직업능력정책관
2-3. 직업훈련시장 육성	
2-4.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	고용정책관
2-5. 외국인력 공급 원활화	
2-6.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	고용서비스기획관
2-7.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	
2-8. 일·가정 양립형 여성 일자리 확대	고용평등정책관
2-9. 고령자·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	
2-10.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고용지원 강화	고용서비스기획관
2-11.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	고용정책관
2-12. 사회적기업 육성	
3.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	
3-1.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	근로기준국, 노사협력정책국
3-2.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	산업안전보건국
3-3.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확충	고용서비스기획관
3-4. 노동규제 개혁	규제개혁법무담당관

2008년 실천과제 주요사업 추진일정

분 기	실천과제 및 주요사업 내용	담당부서	실천일정
1. 노사관계 선진화			
1/4분기	▪ 노사정위 의제별·업종별 회의체 구성·운영	노사협력정책국	연중
	▪ 노사발전재단 지원		연중
	▪ 취약사업장 선정 및 전담감독관 선정		3.31까지
	▪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강화		연중
	▪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TF 구성	국제협력관	3.31까지
	▪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컨설팅 실시		연중
	▪ 노사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	노사협력정책국	연중
	▪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·시행		3.31~
	▪ 비정규직법 관련 제도보완을 위한 협의 및 여론수렴	근로기준국	12.31까지
	▪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실시	노사협력정책국	11.30까지
2/4분기	▪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대상 선정	노사협력정책국	4.11
	▪ 근로자의 날 포상 실시		4.30
	▪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개정		6.30까지
	▪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구성·운영		6.30~
4/4분기	▪ 지역노사협력 성공모델 확산	노사협력정책국	10.1~
	▪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		12.31까지
	▪ 복수노조, 노조전임자 관련 법개정안 국회 제출		11.30까지
2. 활력있는 노동시장			
1/4분기	▪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	근로기준국	연중
	▪ 관계부처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기업화 지원	고용정책관	연중
	▪ 정년연장장려금 지급	고용평등정책관	1.1~
	▪ 중소기업근로자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확대	직업능력정책관	2.1~
	▪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3천명 실시	고용서비스기획관	3.1~

분 기	실천과제 및 주요사업 내용	담당부서	실천일정
2/4분기	▪ 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사업 시행	직업능력정책관	4.1~
	▪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산-학-관 협약 체결	고용서비스기획관	4.25
	▪ 파트타임 일자리 DB 구축	고용평등정책관	5.31까지
	▪ 외국인력 부족 실태조사 실시	고용정책관	6.30까지
	▪ 외국인력수급계획 조정		6.30까지
3/4분기	▪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	산업안전보건국	7.1~
	▪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개정안 국회제출	고용정책관	8.31까지
	▪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		8.31까지
	▪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운영	고용평등정책관	9.1~
	▪ 직업훈련기관 과정 평가, 선택 가능한 훈련과정 목록 공개	직업능력정책관	9.30까지
4/4분기	▪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 국회제출	직업능력정책관	11.30까지
	▪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위한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	고용서비스기획관	12.31까지
	▪ 산전후휴가비용 사회화 방안 마련	고용평등정책관	12.31까지
	▪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		12.31까지
	▪ 장애인의무고용제 개편		12.31까지
	▪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강구	고용정책관	12.31까지
3.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			
1/4분기	▪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제도 시행	노사협력정책국	연중
	▪ 취약분야 중심 근로감독	근로기준국	연중
	▪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시행	노사협력정책국	연중
	▪ 고용지원센터-129센터-민간기관등 연계	고용서비스기획관	연중
	▪ 고용지원센터 운영 혁신		연중
	▪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센터 확충		연중
2/4분기	▪ 3대 다발재해 발생·취약사업장 안전교육·기술지원	산업안전보건국	4.1~
	▪ 노사참여 「규제개혁 TF」 구성·운영	규제개혁법무담당관	4월~
	▪ 노동규제 전면 재검토		6.30까지